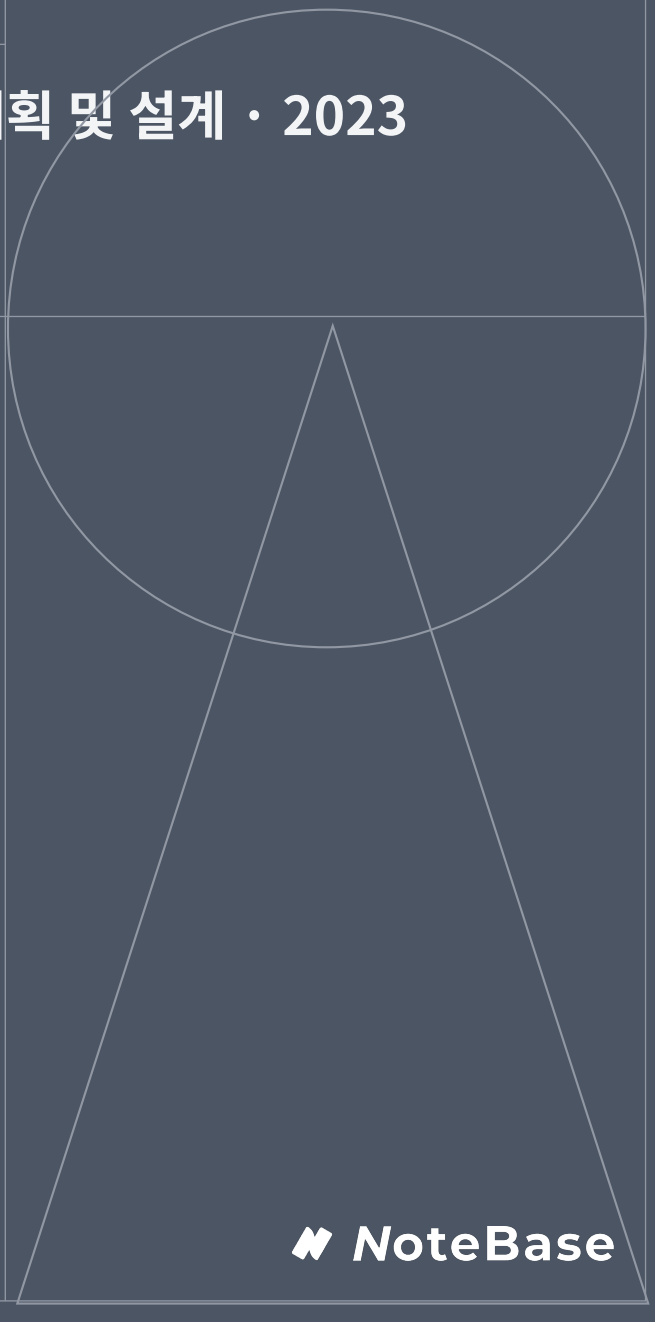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3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3

**공무원/서울시/7급 · 조경계획 및 설계 · 2023**

**문 1. 조경설계 도면에서 사용되는 선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파선은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표시한다.

② 실선은 도면의 단면선 또는 부지경계선을 표시한다.

③ 일점쇄선은 물체 및 도형의 중심선이나 대칭축을 표시한다.

④ 이점쇄선은 물체가 있을 것으로 가상되는 부분을 표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설계 도면에서 실선, 파선, 일점쇄선, 이점쇄선의 용도를 정확히 구별하는지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선은 실제로 보이는 외형선, 단면의 외형선, 부지외곽선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나타내는 선이다.
파선은 물체의 뒤쪽이나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숨은선이다.
일점쇄선은 중심선, 대칭축, 부지경계선, 단면선처럼 기준축이나 기준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다.
이점쇄선은 가상선으로, 물체의 가상 위치나 있을 것으로 상정한 부분을 나타내는 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파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는 숨은선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실선은 도면의 단면선 또는 부지경계선을 표시한다"이다. 실선은 보이는 외형이나 단면의 외형, 부지외곽선을 표시한다. 단면선과 부지경계선은 일점쇄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
③ O: 일점쇄선은 중심선이나 대칭축처럼 기준이 되는 축을 나타내는 선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O: 이점쇄선은 가상되는 부분이나 가상 위치를 나타내는 선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실선과 일점쇄선을 헷갈리면 ②를 맞는 설명으로 오인하기 쉽다. 특히 부지외곽선은 실선, 부지경계선은 일점쇄선이라는 구분을 바꾸어 기억하면 오답이 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의 용도 문제는 먼저 보이는 형상인지, 숨은 부분인지, 기준축·경계인지, 가상 위치인지를 구분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보이는 형상은 실선, 숨은 부분은 파선, 축·경계·단면선은 일점쇄선, 가상 부분은 이점쇄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보이는 것은 실선, 숨은 것은 파선, 축·경계는 일점쇄선, 가상 위치는 이점쇄선이다.

NoteBase

**문 2. 문화재보호법령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호물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② 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④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에서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은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5미터부터 100미터까지의 구역을 말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상 보호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정의와 시행령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개념 정의와 거리 기준이 각각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나누는 데 있다.

**용어 풀이**

보호구역은 지정문화재 자체의 점유 면적 밖에서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구역이다.
보호물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범위이다.

**핵심 구분**

보호구역은 지정문화재의 바깥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고, 보호물은 문화재 자체를 지키기 위한 건물이나 시설물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보호구역과 별개로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범위이다.
시행령 별표의 거리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보호물이 건조물인 경우와 보호책·담장 등인 경우의 수치가 서로 다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문화재보호법은 보호물을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로 정의한다. 선지의 문구는 법률상 정의와 일치한다.

② O
보호구역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 중 해당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선지의 정의가 그대로 맞다.

③ O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선지는 조문 취지를 옳게 서술한 것이다.

④ X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기준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돌출점 등을 기준으로 바깥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이고,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이다.
틀린 표현: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5미터부터 100미터까지"
올바른 표현: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

### 오답 포인트

보호구역 일반 기준의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보호물이 건조물인 경우의 5미터부터 50미터까지, 보호책·담장 등인 경우의 2미터부터 20미터까지를 서로 섞으면 오답이 된다. ④는 서로 다른 기준을 합쳐 놓은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정의 문제는 먼저 개념 정의를 법률 조문 기준으로 확인하고, 거리·면적·기간 같은 수치 문제는 시행령이나 별표의 대상별 기준을 따로 분리해서 판단하면 된다. 특히 건조물 기준과 보호책·담장 기준이 같은지부터 확인하면 ④ 같은 혼합형 오답을 걸러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보호물은 건물·시설물, 보호구역은 바깥 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조례 범위, 보호책·담장 기준은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이다.

NoteBase

**문 3. <보기>에서 (가)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농업과 양잠은 의식(衣食)의 근원이고 백성의 생명에 관계되는 것이니, 그 여러 도(道)의 감사(監司)들로 하여금 군현(郡縣)을 나누어 독려하여 초겨울에는 제방(堤防)을 쌓고 화재(火災)를 금하게 할 것이며, 첫 봄에는 (가)를 심고, 5월 달에는 (가)의 열매를 심게 하여 감히 혹시라도 태만하지 말게 할 것이다.
-『태조실록 15권』-

① 소나무
② 배롱나무
③ 뽕나무
④ 향나무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조선 초기 기록에 나온 '양잠'과 연결되는 수종, 즉 뽕나무의 기능과 단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뽕나무는 누에의 먹이가 되는 잎을 제공하는 대표 수종이어서 전통적으로 양잠과 함께 언급된다. 제시문은 '농업과 양잠', '의식의 근원', '5월의 열매'를 함께 말하므로 오디가 열리는 뽕나무를 가리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나무는 목재, 방풍, 상징수의 성격이 강한 침엽수이다. 제시문의 핵심인 양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를 소나무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가)는 양잠과 연결되는 뽕나무이다.
② X: 배롱나무는 여름꽃이 특징인 관상수이다. 누에 사육이나 오디와 연결되는 수종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가)를 배롱나무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가)는 양잠용 식엽과 열매를 함께 떠올릴 수 있는 뽕나무이다.
③ O: 뽕나무는 누에의 먹이가 되는 잎을 제공하므로 양잠의 기반이 되는 수종이다. 또한 5월경 오디가 열려 제시문의 '5월 달에는 (가)의 열매'라는 표현과도 맞는다.
④ X: 향나무는 향과 수형을 이용하는 상록 침엽수로서 조경수의 성격이 강하다. 제시문의 농업·양잠 맥락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를 향나무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가)는 양잠을 위해 재배한 뽕나무이다.

**오답 포인트**

수종 이름만 보고 일반 조경수를 고르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수형이나 관상성이 아니라 '양잠'이라는 기능어를 잡아야 하며, 그 단어가 바로 뽕나무를 결정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전통 경관이나 실록 지문에서 농업과 함께 양잠이 나오면 먼저 뽕나무를 떠올린다. 제시문에 누에, 양잠, 오디처럼 기능을 특정하는 단서가 있으면 관상수와 침엽수 선택지는 우선 배제된다.

**암기 포인트**

양잠이면 뽕나무, 뽕나무 열매는 오디이다.

NoteBase

**문 4. 「조경설계 표준품셈」상 투입인원수 산정을 위한 대상지 성격에 따른 보정계수를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 주제형 사업 - 도시공원 - 녹지

② 녹지 - 도시공원 -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 주제형 사업

③ 주제형 사업 -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 도시공원 - 녹지

④ 녹지 - 도시공원 - 주제형 사업 -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정답 2번**

###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설계 표준품셈」의 대상지 성격별 보정계수를 낮은 값부터 높은 값까지 배열하는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 올바른 순서

녹지(0.8) -> 도시공원(1.0) ->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1.1) -> 주제형 사업(1.2)이다.
보정계수는 대상지의 성격이 복잡하고 설계 고려요소가 많아질수록 커진다. 따라서 가장 단순한 녹지가 가장 낮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복합 기능을 다루는 주제형 사업이 가장 높다.

### 선지별 해설

① X: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을 맨 앞에 둔 것이 틀리다.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은 1.1로 도시공원보다 크고 녹지보다도 크다. 올바르게는 녹지와 도시공원이 먼저 와야 한다.
② O: 녹지 0.8, 도시공원 1.0,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주제형 사업 1.2의 오름차순 배열이므로 맞다.
③ X: '주제형 사업'을 가장 낮은 계수로 둔 것이 틀리다. 주제형 사업은 1.2로 네 유형 중 가장 높다. 올바르게는 맨 마지막에 와야 한다.
④ X: 앞의 두 단계는 맞지만 '주제형 사업'과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의 순서가 뒤바뀌었다.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이 주제형 사업 1.2보다 작으므로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이 먼저다.

### 오답 포인트

도시공원과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주제형 사업이 최댓값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특히 ④처럼 앞부분 두 개만 맞추고 뒤의 1.1과 1.2를 바꿔 놓는 배열이 대표적 함정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치 배열 문제는 범주 이름을 외우기보다 각 대상지의 계수를 먼저 고정한 뒤 오름차순으로 다시 배열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0.8, 1.0, 1.1, 1.2를 먼저 떠올리면 곧바로 판단할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보정계수는 녹지 0.8 < 도시공원 1.0 <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1.1 < 주제형 사업 1.2이다.

NoteBase

**문 5. 공무원 갑(甲)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도시공원 세분 업무를 하면서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기타 공원을 편의상 1부터 4까지 숫자를 부여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된 척도는?**

① 비율척도(ratio scale)

② 서열척도(ordinal scale)

③ 등간척도(interval scale)

④ 명목척도(nominal scale)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숫자가 측정값인지 단순한 범주 표시인지 구분하여 척도의 수준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명목척도는 대상을 범주로만 구분하는 척도이며 숫자는 이름표 역할만 한다.
서열척도는 대상 사이의 순서만 나타내고 간격의 크기는 알 수 없다.
등간척도는 값 사이의 간격이 같아 차이 비교가 가능하지만 절대영점이 없다.
비율척도는 절대영점이 있어 배수 비교까지 가능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비율척도는 절대영점이 있고 2배, 3배 같은 비율 비교가 가능한 경우이다. 이 문항의 1부터 4까지 숫자는 공원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부호일 뿐 양의 크기를 뜻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비율척도"이며, 올바르게는 "범주를 구분하는 명목척도"이다.
② X: 서열척도는 높고 낮음이나 앞뒤 같은 순서가 있어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기타 공원에 붙인 1부터 4까지 숫자는 편의상 부여한 번호이므로 순위 의미가 없다. 틀린 표현은 "서열척도"이며, 올바르게는 "순서 없는 범주 구분인 명목척도"이다.
③ X: 등간척도는 값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여 차이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 문항의 숫자는 공원 종류를 식별하는 기호라서 1과 2의 차이, 2와 3의 차이를 측정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틀린 표현은 "등간척도"이며, 올바르게는 "간격 의미가 없는 명목척도"이다.
④ O: 명목척도는 대상을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하는 척도이다. 문제의 숫자 1부터 4는 공원 유형을 편의상 구분한 코드이므로 명목척도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숫자 1부터 4가 보이면 서열이나 크기 개념을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문제에서 "편의상" 숫자를 부여했다고 했으므로 숫자는 측정값이 아니라 단순 코드이며, 이 점을 놓치면 ②로 오답을 고르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숫자가 단순한 이름표나 분류코드이면 명목척도이다. 숫자에 순위 의미만 있으면 서열척도이고, 일정한 간격 비교가 가능하면 등간척도이며, 절대영점과 배수 비교까지 가능하면 비율척도이다.

**암기 포인트**

이름표는 명목, 순위는 서열, 간격은 등간, 절대영점은 비율이다.

NoteBase

**문 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원칙상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②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원칙상 500$m^2$에 세대당 2.5$m^2$를 더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고,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 정원을 설치해야 한다.

④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민공동시설의 의무 포함 시설과 세대수별 설치면적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150세대 이상 의무시설, 1,000세대 이상 면적기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다.

**용어 풀이**

주민공동시설은 주택단지 입주자의 복리와 공동생활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경로당은 노인을 위한 공동 이용시설이고, 어린이놀이터는 단지 내 아동 놀이공간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된다. 다만 면적기준은 세대수 구간별로 다르다.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은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고,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이다.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와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부속정원 등의 기준이 적용되고, 어린이놀이터는 놀이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 또는 녹지와 어우러지게 설치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1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원칙적으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민공동시설의 필수 포함 시설을 묻는 기준과 일치한다.

② X
틀린 이유는 1,000세대 이상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가산면적을 2.5제곱미터로 적었기 때문이다. 1,000세대 이상은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틀린 표현: "세대당 2.5제곱미터"
올바른 표현: "세대당 2제곱미터"
또한 세대당 2.5제곱미터 기준은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구간에 해당한다.

③ O
경로당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하고, 급수시설·취사시설·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해야 한다. 선지는 경로당 설치기준의 일부를 정확히 옮긴 것이다. 조문에는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기준도 추가로 있으나, 선지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④ O
어린이놀이터에는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해야 한다. 선지는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 오답 포인트

②의 2.5제곱미터를 1,000세대 이상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출제자는 세대수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면적기준을 서로 바꾸어 제시하는 방식으로 함정을 만든 것이다. 또 ③은 조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적혀 있어 불완전하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일부 진술이 기준과 일치하면 그 자체로는 옳은 선지가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세대수 기준과 시설 종류를 분리해서 본다. 그다음 150세대 이상 필수시설인지, 1,000세대 이상 면적산식인지, 경로당 기준인지, 어린이놀이터 기준인지 조문 축을 나누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면적 숫자가 나오면 1,000세대 이상은 "500 + 세대당 2"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어린이놀이터, 1,000세대 이상 면적은 500 + 세대당 2, 2.5는 1,000세대 미만 기준이다.

NoteBase

**문 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농업의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건물활용형
② 근린생활형
③ 학교교육형
④ 도심형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은 시행규칙이 열거한 법정 유형과 없는 명칭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세부 유형 =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에 따라 시행규칙이 나눈 유형 구분이다.

**핵심 구분**

시행규칙 제2조는 도시농업의 세부 유형을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 · 공원형, 학교교육형으로 구분한다.
열거된 다섯 유형 외의 명칭은 세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시행규칙 제2조에 공공건물활용형이라는 세부 유형은 없다. 법정 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 · 공원형, 학교교육형의 다섯 가지이다.
- 틀린 표현: 공공건물활용형
- 올바른 표현: 시행규칙상 세부 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 · 공원형, 학교교육형이다.

② O
- 근린생활형은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므로 시행규칙상 세부 유형에 해당한다.

③ O
- 학교교육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텃밭 및 기타 학교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므로 시행규칙상 세부 유형에 해당한다.

④ O
- 도심형은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및 고층건물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이므로 시행규칙상 세부 유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공공건물활용형은 그럴듯한 합성어라서 실제 법정 유형처럼 보이기 쉽다. 특히 ②의 공공목적형 주말텃밭과 단어가 비슷해 공공이라는 표현만 보고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의 열거형 문제는 조문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문 목록에 없는 합성어가 나오면 우선 배제하는 것이 맞다.

**암기 포인트**

도시농업 5유형은 주택활용형, 근린생활형, 도심형, 농장형 · 공원형, 학교교육형이다.

NoteBase

**문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화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③ 해당 지역의 공원녹지 등의 보호

④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녹화계약의 조건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법이 열거한 세 가지 조건과 법문에 없는 표현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녹화계약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소유자 등과 녹지의 보전과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핵심 구분**

법 제13조는 녹화계약의 조건을 세 가지로 열거한다. 해당 지역의 수림대 등의 보호,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가 그것이다.
따라서 법문에 없는 '공원녹지 등의 보호'라는 일반 표현과, 법문에 있는 '수림대 등의 보호'를 구별하는 것이 정답의 핵심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는 법이 정한 녹화계약 조건에 포함된다. 지역의 고유한 식생을 늘리는 방향의 계약은 허용된다.

② O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는 법이 명시한 조건이다. 단순한 녹지 관리가 아니라 식생 비율이 실제로 증가하는지가 기준이 된다.

③ X
법은 '해당 지역의 공원녹지 등의 보호'를 녹화계약 조건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보호 대상으로 든 것은 공원녹지 일반이 아니라 '수림대 등'이다.
틀린 표현: 해당 지역의 공원녹지 등의 보호
올바른 표현: 해당 지역의 수림대 등의 보호

④ O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는 법이 직접 규정한 녹화계약 조건이다. 바람막이숲이나 띠 모양의 수목군 등 보호 가치가 있는 수림대를 유지·보전하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공원녹지'라는 넓은 용어를 넣어 법문처럼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법 조문은 포괄적 표현이 아니라 '수림대 등'이라는 구체적 대상을 사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령형 선지는 먼저 조문이 열거하는 핵심 명사를 확인한다. 포괄어로 바꿔치기한 표현이 나오면 조문상의 정확한 대상인지부터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녹화계약 조건은 수림대 보호, 식생 비율 증가, 대표 식생 증대의 세 가지이다.

NoteBase

**문 9.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상 옥상조경지역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구조물의 적합한 설치 및 관리기준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식재토심은 배수층을 포함하고, 하중을 고려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②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상 옥상조경지역의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구조물 설치·관리기준과 식재토심 규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제18조의 안전구조물 기준과 제15조의 식재토심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용어 풀이**

식재토심은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확보하는 흙층의 깊이이다.
안전구조물은 옥상조경 이용자의 추락이나 전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난간 등의 구조물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옥상조경지역의 이용자 안전 기준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수목 지지대, 안전시설의 정기점검이다.
반면 식재토심은 별도 조항에서 규율하며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기준 두께로 정한다.
즉 안전구조물 기준은 제18조, 식재토심 기준은 제15조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이 선지는 제18조의 안전구조물 기준이 아니라 제15조의 식재토심 규정을 끌어온 점에서 발문과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 "식재토심은 배수층을 포함하고"
올바른 표현: "식재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기준 두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제18조에는 식재토심을 안전구조물 설치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없다.

② O
제18조 제1호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난간 높이 기준을 직접 묻는 전형적인 그대로의 선지이다.

③ O
제18조 제3호는 안전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점검과 유지관리까지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④ O
제18조 제2호는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옥상은 바람 영향이 크므로 수목 전도 방지용 지지대 설치가 안전관리 기준에 포함된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조문의 주제를 바꿔치기한 선지이다. 이용자 안전 구조물을 묻는데 식재토심 규정을 섞었고, 그 식재토심 규정도 배수층을 포함한다고 바꾸어 이중으로 틀리게 만들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정규칙형 문제는 먼저 발문이 묻는 조문의 주제를 잡는다. 이용자 안전 구조물이라면 난간, 지지대, 정기점검 같은 안전시설 키워드만 남기고, 토심, 배수, 관수처럼 다른 조항의 키워드는 바로 제외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옥상조경 안전 3종은 난간 1.2미터, 수목 지지대, 안전시설 정기점검이다.

NoteBase

**문 10. 조경설계방법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제1세대 방법론은 설계자의 창의력에 의존해 오던 설계방법을 말한다.

② 제2세대 방법론은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이용할 공간에 대해 결정하는 참여설계를 말한다.

③ 제3세대 방법론에서는 설계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시 인정하여 전문적인 예측 이후 이에 대한 반박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든다.

④ 제4세대 방법론은 이용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정하고 보완하여 차후 설계에 반영하는 순환적 과정을 강조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브로드벤트의 조경설계방법론을 제1세대부터 제4세대까지 세대별 핵심 키워드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1세대는 설계자의 직관적 창작이 아니라 체계적 설계과정과 분석적 접근을 중시한 방법론이다.
제2세대는 이용자의 요구와 참여를 설계과정에 반영하는 참여설계가 핵심이다.
제3세대는 전문가의 예측을 세운 뒤 그 예측을 반박하고 검토하는 논증적 과정이 핵심이다.
제4세대는 이용 후 평가를 다시 설계에 환류시키는 순환적 과정이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설계자의 창의력에 의존해 오던 설계방법'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전통적 직관 설계에 가까운 설명이며, 제1세대 방법론은 체계적 설계과정과 분석적 파악을 중시한 방법론이다.
② O. 제2세대 방법론은 이용자의 요구와 평가, 참여를 중시하는 참여설계의 성격을 가진다.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할 공간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는 설명이 핵심 취지와 맞다.
③ O. 제3세대 방법론은 전문가의 전문성과 경험을 다시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예측을 세운 뒤 그 예측을 반박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④ O. 제4세대 방법론은 이용 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고 이를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환류적·순환적 과정을 강조한다.

**오답 포인트**

제1세대를 '옛날 방식이므로 감각과 창의력 중심'이라고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세대 구분은 직관성보다 설계과정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나뉘며, 1세대는 체계화, 2세대는 참여, 3세대는 예측·반박, 4세대는 이용 후 평가의 환류로 정리된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대별 대표 키워드를 먼저 대응시키면 빠르게 풀린다. 1세대는 체계적 과정, 2세대는 참여설계, 3세대는 예측과 반박, 4세대는 이용 후 평가와 순환적 환류로 판단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1체계, 2참여, 3예측·반박, 4POE 환류로 기억하면 정리가 된다.

NoteBase

**문 11.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지정 ·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 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 · 관리한다.

②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③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경관지구, 공원마을지구 등을 지정 · 관리할 수 있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정의, 공원 종류별 지정·관리 주체, 자연공원 지정 고시 사항, 용도지구 명칭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용도지구의 정확한 법정 명칭을 가려내는 것이다.

**용어 풀이**

공원관리청 = 해당 자연공원을 지정·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용도지구 = 자연공원 안에서 보전과 이용의 정도에 따라 나누는 세부 구역이다.

**핵심 구분**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정의한다.
자연공원을 지정하면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용도지구의 법정 명칭은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이며, 공원자연경관지구라는 명칭은 없다.
현행법은 2025.10.1. 시행 개정으로 제4조와 제6조의 환경부장관·환경부령 명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시험 당시 법 기준에서는 맞는 설명이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 각각 지정·관리하였다.
현행법은 2025.10.1. 시행 개정으로 국립공원 지정·관리 주체 명칭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바뀌었다.

② O
「자연공원법」 제2조는 자연공원을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선지의 열거는 법문에 부합한다.

③ O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법문과 맞다.
현행법은 2025.10.1. 시행 개정으로 환경부령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바뀌었다.

④ X
틀린 표현은 공원자연경관지구이다.
올바른 표현은 공원자연환경지구이다.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는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등으로 나뉜다.

### 오답 포인트

④는 자연환경지구를 자연경관지구로 바꿔 적은 함정이다.
또한 ①과 ③은 현행법상 부처 명칭이 바뀌어 현재 기준으로만 읽으면 흔들릴 수 있으나, 문항의 정답 포인트는 주체 구조와 고시 사항, 용도지구 명칭의 정확성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공원법 문제는 먼저 제2조 정의, 제4조 지정·관리 주체, 제6조 고시 사항, 제18조 용도지구 명칭 순서로 대조하면 된다.
특히 법정 명칭은 비슷한 단어 하나만 바꿔도 오답이 되므로 환경과 경관 같은 유사어를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암기 포인트

용도지구는 보존-환경-마을로 기억하고, 공원자연경관지구라는 명칭은 없다고 정리한다.

NoteBase

**문 12. 조경 공간의 운영 관리 방식 중 도급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규모가 큰 시설의 관리업무에 효과적이다.

② 전문지식, 기술,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적합하다.

③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고 관리책임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다.

④ 단순한 노무관리 업무에 유리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 공간 운영관리의 도급방식이 가지는 장점과 직영방식이 가지는 장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도급방식은 외부 전문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겨 전문성 활용과 인력운영 부담 경감을 꾀하는 방식이다.
직영방식은 관리주체가 인력과 업무를 직접 운영하여 즉시 지시와 긴급 대응이 쉬운 방식이다.
구별 기준은 누가 직접 수행하느냐와 그에 따라 전문성 활용에 강한지, 즉시 대응에 강한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규모가 큰 시설은 관리 범위가 넓고 업무가 다양하므로 외부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도급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

② O
도급방식은 전문지식, 기술, 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해당 분야 업체에 맡길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긴급한 대응이 가능하고 관리책임이나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표현이다.
도급방식은 외부업체를 거쳐 업무가 수행되므로 긴급 상황에서 즉시 대응하는 면에서는 직영방식보다 불리하다.
관리책임도 직접 지휘하는 직영방식보다 일원적으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도급방식은 전문업체 활용에 유리하지만 긴급 대응과 직접적 책임관리는 직영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이다.

④ O
단순한 노무관리 업무는 외부에 맡겨 인력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도급방식에 유리한 영역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도급방식의 장점인 전문성 활용과 노무관리 부담 경감을 보고, 직영방식의 장점인 즉시 대응성과 직접 책임성을 함께 붙이면 헷갈리기 쉽다. ③은 서로 다른 방식의 장점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부 전문업체 활용, 자격업무 수행, 노무관리 부담 경감이 나오면 도급방식을 떠올린다. 긴급 대응, 직접 지휘, 책임의 일원화가 나오면 직영방식 쪽 특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도급은 전문성, 직영은 즉시성이다.

NoteBase

**문 14. 『조경설계기준(KDS : 2019)』상 마운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마운딩은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토량 확보·마운딩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한다.

② 소음차단에 목적을 둔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쪽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와 주변에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토성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 부등침하 및 토사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마운딩의 바닥은 노체다짐(90%)으로 하며, 지표에서 1.5m까지는 식재를 위하여 비다짐으로 설계하며 다짐 없이 흙을 쌓아 올리는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흙쌓기를 반영한다.

**정답 3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설계기준(KDS : 2019)」상 마운딩의 토양 선정 원칙과 조성 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표토 우선 사용 원칙, 방음용 마운딩의 배치 원칙, 바닥 다짐 기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마운딩은 지형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조경공사용 흙쌓기기법이다. 표토는 식물 생육에 유리한 상부 토양으로, 마운딩 조성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토양이다.

**핵심 구분**

원칙적으로 마운딩 조성 토양은 표토를 사용한다. 다만 표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양질의 토사를 활용한다. 방음용 마운딩은 음원과 수음점 사이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 쪽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의 바닥은 노체다짐 90%를 하고 지표에서 1.5m까지는 식재를 위해 비다짐으로 설계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기준은 마운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토량 확보, 대상지역의 폭원 및 조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선지는 안정성 검토 기준을 그대로 반영한 진술이다.
② O: 기준은 소음차단 목적의 방음용 마운딩에 대해 음원과 수음점과의 거리를 크게 하고 음원 쪽 마운딩을 높게 하며, 마운딩 위와 주변에 식재 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선지는 해당 기준과 일치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토성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며'이다. 기준은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을 표토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표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만 양질의 토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올바른 표현은 '마운딩 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고 표토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양질의 토사를 활용하며 부등침하 및 토사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이다.
④ O: 기준은 마운딩의 바닥을 노체다짐(90%)으로 하고, 지표에서 1.5m까지는 식재를 위해 비다짐으로 설계하며, 다짐 없이 흙을 쌓아 올리는 경우에는 침하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흙쌓기를 반영하도록 한다. 선지는 기준 내용과 일치한다.

### 오답 포인트

③은 뒤 문장인 '부등침하 및 토사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가 맞는 말이어서 앞의 잘못된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는 함정이 있다. 마운딩 토양은 아무 흙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표토 우선, 예외적으로 양질 토사를 쓰는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오답이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형 문항에서는 먼저 발문의 '옳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각 선지의 핵심 명사를 기준 문구와 대조하면 된다. 이 문제처럼 토양 기준이 나오면 '표토 원칙, 부족 시 양질 토사'라는 원칙부터 확인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마운딩은 표토 우선, 방음용은 음원 쪽 높게, 바닥은 90% 다짐이 핵심이다.

NoteBase

**문 15.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상 식재수량 및 규격의 가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②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③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④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조경기준」 제7조 제2항의 식재수량 가중 산정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낙엽교목과 상록교목의 규격별 환산 주수가 2주, 4주, 8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가중 산정 = 큰 규격의 수목 1주를 일반 교목 여러 주를 식재한 것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흉고직경 = 지표면에서 120센티미터 높이 지점의 줄기 직경이다.
근원직경 = 지표면에서의 줄기 직경이다.
수관폭 =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이다.

**핵심 구분**

「조경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2주 기준은 낙엽교목은 수고 4미터 이상에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은 수고 4미터 이상에 수관폭 2미터 이상이다.
4주 기준은 낙엽교목은 수고 5미터 이상에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은 수고 5미터 이상에 수관폭 3미터 이상이다.
8주 기준은 낙엽교목은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은 수관폭 5미터 이상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이면 교목 2주로 가중 산정한다는 내용이므로 기준과 일치한다.

② O
-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이면 교목 2주로 가중 산정한다는 내용이므로 기준과 일치한다.

③ O
-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이면 교목 4주로 가중 산정하므로 기준과 일치한다.

④ X
-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틀린 표현: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올바른 표현: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 교목 8주 기준은 상록교목의 경우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이다.

### 오답 포인트

④는 상록교목의 4주 기준과 8주 기준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수고 5미터 이상과 수관폭 3미터 이상은 4주 기준인데, 이를 8주로 바꾸면 틀리게 된다. 상록교목의 8주 기준은 수관폭 5미터 이상이라는 별도 기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낙엽교목인지 상록교목인지 나눈 뒤, 2주인지 4주인지 8주인지에 따라 대응하는 숫자 기준을 대입하면 된다. 상록교목은 4미터·2미터면 2주, 5미터·3미터면 4주, 수관폭 5미터면 8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상록교목은 4-2면 2주, 5-3이면 4주, 폭 5면 8주이다. 낙엽교목은 12·15, 18·20, 25·30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NoteBase

**문 16. 「경관법」상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관권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경관법」상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경관권역과 경관지구를 구별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및 공공건축물 관련 심의대상을 함께 묶어 판단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경관지구 = 양호한 경관의 보호·형성을 위하여 지정된 지구로서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간 단위이다.
경관권역 = 경관계획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나눈 계획상 권역으로, 그 자체가 곧바로 건축물 심의대상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 특히 경관 관리가 필요하여 건축물 심의대상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는 구역이다.

**핵심 구분**

경관위원회의 건축물 심의대상은 경관권역이 아니라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조례상 건축물이다.
원칙적으로 시행령이 대상 범주를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열거되는 것은 경관권역의 건축물이 아니라 경관지구의 건축물이다. 경관권역은 경관계획상 구분 개념이므로 이 선지처럼 바로 심의대상 건축물 범주로 쓰이지 않는다.
- 틀린 표현: "경관권역의 건축물"
- 올바른 표현: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O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한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법령이 별도로 심의대상 범주로 두는 구역이다.

③ O
- 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이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할 수 있다. 선지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적고 있으므로 맞다.

④ O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성이 큰 건축물에 대한 별도 심의범주이다.

### 오답 포인트

이 문제를 틀렸다면 경관권역과 경관지구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둘 다 경관계획 관련 용어이지만, 심의대상 건축물의 직접 기준으로 쓰이는 것은 경관지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 심의대상 문제는 먼저 경관권역인지 경관지구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중점경관관리구역과 공공건축물 범주가 함께 열거되는지를 확인하면 정답을 빠르게 가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심의대상은 경관권역이 아니라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공공건축물이다.

NoteBase

**문 17.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담장은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며, 울타리용 조경수를 식재할 경우 수고는 최대 1.2미터로 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놀이터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건축물의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접근통제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조경은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상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범죄예방 세부기준에서 담장,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출입구 및 조경 계획 기준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자연적 감시는 거주자나 이용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아 범죄 기회를 줄이는 방식이다. 접근통제는 출입구나 동선을 통제하여 외부인의 무단 접근을 어렵게 하는 방식이다.

**핵심 구분**

고시 기준은 담장을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자연적 감시를 위하여 투시형으로 계획하도록 본다. 또한 울타리용 조경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를 최대 1.2미터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으로 계획하도록 본다.

**선지별 해설**

① X. 담장을 투시형으로 계획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울타리용 조경수 높이 기준이 틀렸다. 틀린 표현은 '수고는 최대 1.2미터'이고, 올바른 표현은 '수고는 1미터에서 1.5미터 이내인 밀생 수종으로 계획한다'이다. ② O. 주차장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미터 이내 간격으로 두어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므로 옳다. ③ O. 어린이놀이터는 통행이 많거나 건축물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세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므로 옳다. ④ O. 건축물 출입구에는 접근통제시설을 두어 출입통제가 용이해야 하고, 조경은 주거 침입의 발판이나 은신처로 이용되지 않도록 식재해야 하므로 옳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①은 담장 기준의 앞부분이 맞기 때문에 뒤의 수치만 바꿔 넣어도 그럴듯해 보이는 함정이다. 이 문항은 문장 전체가 길어도 결국 수고 기준 숫자 하나를 정확히 기억했는지를 묻는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범죄예방 건축기준 문제는 먼저 발문이 '옳지 않은 것'인지 확인한 뒤, 각 선지에서 수치, 거리, 높이, 설치 위치처럼 기준이 고정된 요소를 먼저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아파트 CPTED 기준은 담장 투시형, 비상벨 25미터, 놀이터는 잘 보이는 곳, 조경은 침입수단 방지, 울타리 조경수는 1미터에서 1.5미터이다.

NoteBase

**문 18. 쾨펜(Köppen)의 기후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쾨펜은 1918년에 주요 기후를 분류하였고, 계속 수정하여 1936년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② 쾨펜은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월평균기온, 월평균 강수량 등을 기초로 두고 기후구분을 시도하였다.

③ 쾨펜은 기온과 강수량을 기본으로 기후구분을 기호로 유형화하였다. 제1차 기호는 A, B, C, D, E이며, 제2차 기호와 제3차 기호는 소문자를 써서 나타내었다.

④ 기후형 A와 C, D는 나무가 생육할 수 없는 무(無) 수목기후이며, 기후형 B와 E는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수목기후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쾨펜의 기후구분 체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각 대기후형이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쾨펜의 기후구분은 식생 분포와 잘 대응하도록 기온과 강수의 연중 분포를 기준으로 기후를 분류한 체계이다.
제1차 기호 A, B, C, D, E는 대기후형을 뜻하고, 제2차·제3차 기호는 강수 특성과 기온 특성을 소문자로 세분한다.
수목기후는 대체로 A, C, D이고, 무수목기후는 건조한 B와 한랭한 E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쾨펜은 1918년에 기후구분 체계를 발표한 뒤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36년에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② O. 쾨펜은 식생 분포와 대응시키기 위해 월평균기온과 월평균강수량 같은 기후 요소를 기준으로 기후구분을 시도하였다.
③ O. 쾨펜 기후구분은 기온과 강수량을 중심으로 기후를 기호화한 체계이다. 제1차 기호는 A, B, C, D, E의 대문자이고, 제2차·제3차 기호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기후형 A와 C, D는 나무가 생육할 수 없는 무수목기후이며, 기후형 B와 E는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수목기후"라는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A, C, D는 수목기후이고, B와 E는 무수목기후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수목기후와 무수목기후의 대응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B를 건조기후, E를 한대기후로만 외우고 수목 생육 가능 여부를 연결하지 못하면 헷갈리기 쉽다.

NoteBase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쾨펜 문항은 먼저 제1차 기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A·C·D는 수목기후, B·E는 무수목기후라는 큰 구도를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A·C·D는 수목, B·E는 무수목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19.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상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원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상지역 내 도시지역은 현장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작성하며,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관리 및 갱신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Metadata)는 주제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 단체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④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원칙 중 현장조사 범위, GIS 호환, 메타데이터 구축 기준, 추가 주제도 검토 절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메타데이터는 주제도의 작성 목적, 제작 주체, 좌표체계, 속성 등 자료 자체를 설명하는 표준화된 부가정보이다.

**핵심 구분**

출제 당시 지침은 메타데이터를 전문가 단체 의견에 따라 정하도록 하지 않고, 별표 1에 따라 구축하도록 정한다. 검토위원회나 전문가 의견수렴은 작성의 공정성 확보나 추가 주제도 검토와 관련된 절차이고,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자체를 정하는 근거는 아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 지침은 대상지역 내 도시지역은 현장조사를 필수적으로 수행하여 작성하고,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은 이미 구축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

② X
- 메타데이터는 주제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 단체를 구성해 그 의견에 따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별표 1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 틀린 표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가 단체를 구성하여 그 의견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 올바른 표현: 작성된 주제도의 메타데이터는 별표 1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③ O
- 지침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한다고 정한다.

④ O
- 지침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지도 작성 전 도시계획, 공원녹지, 교통 등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작성 가능한 주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 오답 포인트

메타데이터의 구축 기준과 검토위원회·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섞으면 ②에 속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별표 1에 따라 구축'이라는 고정 기준을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구축'으로 바꾸어 놓은 데 있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침형 문제에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별표에 따른다' 같은 규정 문구를 먼저 확인하면 된다. 작성 기준이 별표나 조문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이나 재량으로 바꾼 선지는 오답이다.

### 암기 포인트

메타데이터는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별표 기준, GIS는 통합체계 호환, 추가 주제도는 의견수렴 후 검토 가능이다.

NoteBase

**문 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의 생태환경분야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계된 녹지축의 조성 항목에서 녹지축의 폭은 4m 이상이고 단절된 길이가 1m 미만이어야 하며, 부분 단절된 길이의 합이 3m 이내인 경우 인정 가능하다.

②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에서 자연지반 녹지는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포함한다.

③ 생태면적률 항목에서 생태면적률은 피복유형과 식재유형을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식재유형의 경우 수고 4.0m 이상은 환산면적을 3.0으로 적용한다.

④ 비오톱 조성 항목에서 수생비오톱의 최소단위면적은 $180m^2$이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녹색건축 인증기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의 생태환경분야 인증심사기준 중 연계된 녹지축,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의 수치와 정의를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자연지반 녹지 =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이다.
생태면적률 = 피복유형과 식재유형의 환산계수를 적용해 산정하는 생태적 유효면적의 비율이다.
비오톱 = 동식물의 서식과 생육이 가능한 소규모 생태공간이다.

**핵심 구분**

연계된 녹지축은 폭 4m 이상, 단절된 길이 1m 미만, 부분 단절 길이의 합 3m 이내이면 인정된다.
자연지반 녹지는 자연지반뿐 아니라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도 포함한다.
생태면적률의 식재유형에서는 수고 4.0m 이상을 환산면적 3.0으로 적용한다.
비오톱 최소단위면적은 수생비오톱 $90m^2$, 육생비오톱 $180m^2$로 구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연계된 녹지축의 조성 항목에서 인정기준은 폭 4m 이상, 단절된 길이 1m 미만, 부분 단절 길이의 합 3m 이내이다. 선지의 수치가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다.

② O
자연지반 녹지율 항목의 자연지반 녹지는 자연지반 자체뿐 아니라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까지 포함한다. 선지의 정의가 기준과 같다.

③ O
생태면적률 항목은 피복유형과 식재유형을 구분해 평가하며, 식재유형에서 수고 4.0m 이상은 환산면적 3.0을 적용한다. 선지의 내용이 정확하다.

④ X
수생비오톱의 최소단위면적을 $180m^2$로 본 부분이 틀렸다.
틀린 표현: 수생비오톱의 최소단위면적은 $180m^2$이다.
올바른 표현: 수생비오톱의 최소단위면적은 $90m^2$이고, $180m^2$는 육생비오톱의 최소단위면적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수생비오톱과 육생비오톱의 최소단위면적을 서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생태환경 분야 문제는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붙는 대상 항목을 혼동할 때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먼저 항목명을 확인한 뒤 그 항목의 정의와 수치를 대응시키면 판단이 정리된다. 연계된 녹지축은 폭과 단절 길이, 자연지반 녹지는 포함범위, 생태면적률은 환산계수, 비오톱은 최소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녹지축은 4-1-3, 식재유형 수고 4.0m 이상은 3.0, 비오톱은 수생 $90m^2$·육생 $180m^2$이다.

NoteBase